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5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97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1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2009. 1. 12. 원고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C 전 9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일단 피고에게 이전하고, 추후 원고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후 수년에 걸쳐 원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각 지분 1/2) 원고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9. 1. 13. “200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소희